

# 임시영업계약서

두타몰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고 함)와 서울디자인재단 (이하 "임차인"이라고 함)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아래 제2조의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영업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두타몰 내 매장 임시 영업(팝업스토어)을 통하여 "임차인"의 상품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목적물)

"임차인"은 매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고정설비를 이용하여 본 계약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는 바,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매장 및 설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매장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4층 50호  
전용면적 109.29 m<sup>2</sup> ( 33.06 평)

### 2. 설비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비용으로 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고정설비로 구성된다.

### 3.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판매 집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 사용하고, 계약 기간 종료 후 매장 철수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 (계약기간 등)

### 1. 계약명: 임시영업 계약

### 2. 운영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4월 30일

### 3. 임대보증금: 0원

### 4. 월 임대료는 15,000,000원이며 2개월 분인 30,000,000원을 선납한다.

### 5. 관리비는 미부과 대상이며(주차비 별도 부과) 익월 20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단, 입금일이 휴무일일 경우는 익일까지 입금한다.)

### 6. "임차인"은 제2항의 기간 동안 일시 운영 목적으로 매장을 사용하는 것이며, "임대인"추후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 기간의 연장 내지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 4조 (수수료율 및 수수료의 지급 등)

### 1.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임차인"의 이용개시일로부터 산정한다.

### 2.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임차인"의 직원이 관리하며, "임차인"은 당일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익일 오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임대인"이 산정한 매출액과 "임차인"이 산정한 매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지정한 카드단말기 및 POS의 자료를 총 매출액으로 보며, "임대인"이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요구 받은 즉시 근거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일 총 매출액에 대해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수수료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단, 입금일이 휴무일 경우는 익일까지 입금한다.)

### 5. 영업 종료일이 월마감 기준일 (매월 말일) 이전일 경우에는 영업 종료일을 정산일로 한다.

## 제 5조 (연체료)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전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시 일률적으로 월 1.5%의 가산금(연체료)을 월할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조("임차인"의 일반적 의무)

1. "임차인"은 매장 상품을 항상 완비하고 가장 우수한 품질의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고객에 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생명, 신체 기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따로 정한 '임시매장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매장 및 설비의 사용 및 관리)**

1. "임차인"은 매장의 설비를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위 권한을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임차인"을 대신하여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은 매장 및 설비 일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 8조(영업시간)**

1. "임차인"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여야 한다.
2. 기타 휴무일 및 영업종료시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서 정한다

**제 9조(카드단말기 및 POS 설치 운영 관리)**

"임차인"은 주무관청의 방침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한 금전등록기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POS 설치 및 카드가맹점은 (재)서울디자인재단과 협의 한 위탁 업체에서 매출 발생 시키기로 한다.**

**제 1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들의 협의로 이를 해결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 분쟁은 제 1조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연대보증)**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조항에 의거 임시영업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임시영업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임차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본 조항은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018년 2 월 27 일

**별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임대인)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사업자등록번호 201-86-04582

법인명 두타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용 만



(임차인)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

사업자등록번호 120-82-09000

상 호 서울 디자인 재단

성 명 서 정 협

